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3/ 6/ 14 통권 162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된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 戰略

###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미국과 손잡고 나라 망친 '필리피노스'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사업소득을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로 신고권유하는  
 세무서 통지문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  
 의·의결

### 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미환류소득에 대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법인세 신고  
 한 경우 3년간은 계속해서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해  
 야 하고, 이후는 투자 제외 방법 적용가능 (p.13)

### <유튜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크리에이터의 세무처리>

개념, 구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개념 정의	혼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 · 배포자	인적 · 물적시설 갖춘 영상 콘텐츠 창작 · 유통
업종구분, 경비율	970306(49.7%)	921505(76.2%)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 불필요 (별도시설 최소)	사업자 등록 해야 함 (인적 · 물적 시설)
업종 분류	개인적 인적용역, 기타자영업	정보통신업의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주요 수익	광고수익, 후원금 등	광고수익, 판매수익, 특별광고계약
세무증빙	소득지급자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수취자가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주로 부가세 면세사업 (독립적인적용역) + (사업장 현황신고서)	부가세과세사업자로 등록 (부가세 정기신고함)
창업중소기업	개인적 인적용역소득으로 해당 안됨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해당
소득세 감면	1인소득이므로 감면대상 아님	사업수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으로 5년 감면됨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현실	유튜버 초기 진입단계	구독자 증가되면서 인력채용, 설비투자 확장 단계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27호 / 주간 24호

2023. 06. 14.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유튜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크리에이터의 세무처리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일용근로자로 신고권유하는 세무서 통지문	2
C E O 에 세 이	미국과 손잡고 나라 망친 '필리피노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해외 주식보유액의 기말평가	5
	-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6
	- 과년도 비용 손금산입 여부	
	- 관계회사간 거래	
	-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현황	9
	-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10
직 장 인 Survival	직장인 영어회화 공부법 여덟번째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증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12
	-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097, 2022.12.06)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부터 가상자산 지급도 신고해야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미환류소득에 대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법인세 신고한 경우 3년간은 계속해서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이후는 투자 제외 방법 적용가능	12
세 무 정 보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15
	-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29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31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32
경 영 정 보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4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48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6

# 사업소득을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로 신고권유하는 세무서 통지문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컨설팅  
(Deal business)  
(829-7575)

개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정의	근로제공에 따른 봉급, 급여, 상여금, 임금, 보너스, 보수	영리 목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 활동소득
종류	정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유직업적 사업소득(부가세 면제) 또는 사업자등록(부가세 과세)
적용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일반 상법, 민법 등
실행방법	통상 한 직장에서 회사의 지시대로 종속 고용(내근직)	여러 조직에서 자유롭게 독립업무(외근직)
4대보험	직장보험 가입자 적용됨	적용안됨(지역가입자 개인부담)
연말정산	회사(소득지급자)가 책임실행	본인(소득자)이 종합소득신고
과세소득	총연봉 - 사회보험료 - 소득공제 등	총수입금액 - 실제 사용 지출한 필요경비 (표준경비율)
적용현실	청년층의 좋은 직장, 정상근무, 연봉제 등	노년층의 부분 취업, 실적·성과제, 부분근무, 프리랜서
원천징수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다단계 누진세율 적용)	지급자가 지급시마다 3.3% 원천징수
적용직무	대·중견·중소기업 정규직, 강한 소속감	비정규직, 보험판매원, 학원강사, 캐디 등(자유직)

# 미국과 손잡고 나라 망친 '필리피노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죽은 지 2달여 만에 단칸방에서 발견됐다. 아마도 굶주림 끝에 죽은 것 같다는 보도다.

따로 살던 할머니의 딸은 소식을 접한 후 할 말을 잃었다. 뉴스를 보는 못사람 역시 무슨 말을 잇겠는가.

가족과 이웃의 안위 없이 혼자만의 행복은 없다.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그렇다. 사랑스런 자식만큼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짐으로 인식한다면 불행이다. 내 자식만을 위한 부정·비리와 변칙증여·상속 그리고 위장전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이 가난해진 것도 기득권들의 더러운 결탁과 비리와 끼리끼리 놀고먹겠다는 게으르고 사악한 이기심의 결과다.

1967년 아세안이 출범할 때만 해도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다. 195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일 때 필리핀을 190달러였다. 오늘날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40달러, 3만5천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로하스가, 케손가, 산토스가, 페레스가, 아키노가 등 이른바 몇 몇 거대 지주가문·기득권들이 부를 모조리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의 권력독점에 따른 만성적 부패에다 단결력이 부족한 국민성이 더하고 있다.

15세기에 불과 수백 명의 스페인 침략자에 의해 정복되었다. 스페인 정복자와 토착민 혼혈계층인 '필리피노스' 중심으로 1898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은 20세기 초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 빛이 바랬다.

1905년 7월29일 일본 외상 가쓰라와 미 육군장관 테프트가 이른바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했다. 바로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고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였다.

필리피노스 계급은 새 지배자인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미국은 그들의 부패를 덮어주고 통치권을 획득했다. 빈부양극화 해소를 통해 미래 경

제발전을 이뤄 나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적으로 잘 살던 나라였다. 아르헨티나 현대사는 군부 쿠데타와 부패 그리고 선심주의 ‘페로니즘’에 따른 타락과 낭비 그리고 게으름에 따른 몰락의 역사다. 1929년 경제공황을 틈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1946년 역시 군인인 후안 도밍고 페론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2차대전시 무역흑자로 축적된 부를 흥청거리며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 낭비했다. 1976년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결국 후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가난한 서민들은 걱정과 애감어린 탕고에 젖어 일상에 지친 고달픈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두 나라는 나라의 운명이 얼마나 한 순간에 갈림길에 접어드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지도층과 서민들의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공존의 미학이며 중도실용·통합의 지혜다.

21세기 세계는 기업가족책임(Corporate Family Responsibility: CFR)의 시대다. ‘일하기 좋은 직장(! GWP: Great Work Place)’운동의 창시자 로버트 레버링 박사가 경제위기에도 살아남는 초일류기업의 세 가지 키워드를 밝혔다. 신뢰, 자부심, 즐거운 일터다. 그것은 투명경영·민주경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2일 (금)	6월 5일 (월)	6월 7일 (수)	6월 8일 (목)
미 달 러 (USD)	1320.70	1308.80	1308.30	1300.50
일 본 엔 (JPY)	951.75	934.02	937.28	928.63
영 국 파 운 드 (GBP)	1654.51	1627.56	1625.43	1617.43
캐 나 다 달 러 (CAD)	982.37	974.82	976.23	972.37
홍 콩 달 러 (HKD)	168.65	167.00	166.81	165.86
중 국 원 (CNH)	185.58	184.32	183.99	182.46
유 로 화 (EUR)	1421.54	1400.55	1398.97	1391.21
호 주 달 러 (AUD)	868.56	863.87	873.09	865.29
싱 가 폴 달 러 (SGD)	980.40	969.01	970.37	964.23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6.27	285.92	283.95	282.87

### 해외 주식보유액의 기말평가

**Q**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해외 주식(거래소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단기매매증권).  
 기말현재 거래종가로 재무제표 반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용환율을 기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가감 반영하면 되는지요?  
 별도의 환율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는지요?

**A** 해외단기매매증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결산시 기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Q** 호텔 행사 예약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닌 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과년도 비용 손금산입 여부

**Q** 과년도 외국납부세액 및 선납법인세를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2018년도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
2. 2018년도 중간예납세액
3. 2021년도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이자소득세)

**A** 국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기간 (10년)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관계회사간 거래

- Q**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특이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중국 H(당사가 지분36%소유) 회사에서 제품 공정중 일정부분(71%)만 진행을 하고, 당사 국내로 수입되어져서 29%를 공정을 진행하고 다시 100% 제품을 중국 H에 납품을 합니다.
  2. H에서 71%을 한국내로 수출(천안은 수입통관)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함.
  3. 천안은 71% 제품에 29% 공정을 진행하여 100% 완제품을 생산하여, 100% price로 H로 수출함.
  4. 매출매입대금은 71%를 H에 주고, 100%을 받음.
- 질의사항)
1.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국제거래 및 국내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까요?
  2. 관계회사간 거래금액과 매출만 늘리고 실익은 별로 없는데요..(운임비(수출시 중국내 관세 납부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A** 귀사가 국내에서 일부분의 위탁가공용역만 제공하고 위탁수수료 부분만 수입(매출)로 반영하는 거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단순 위수탁용역거래임에도 귀사가 전체금액에 대해 매입 및 매출을 반영하는 처리를 하면 매입 및 매출과다 회계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의 사실과 다른 분식회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의 특수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거래의 실제 사실과 다르게 매출 및 매입을 과다 반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Q** 당사는 수출바우처라는 정부과제를 진행중이며, 8월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신고 완료)  
거래처에서 발행 당시, 공급가액에 해외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켰으나, 검토기관에서 이를 제외한 국내대리인 비용만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발급 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정발급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고, 작성일자는 수정사유를 안 날로 하여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귀사의 의견대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한이 경과된 대금결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기한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간에 합의하여 지체상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제기한을 연장해주고 받게 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님

통상 대금결제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상호 합의된 일정금액을 주고받거나, 지연기간에 약정된 이율이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

지체상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받는업체)이나 지급이자(지급업체)로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다.

즉, 대금의 결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대가를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아닌 지급지연에 따른 단순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의5호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된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지체상금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의 손금으로 반영

법인세법상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을 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 서면3팀-699, 2008.04.0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현황

시행 시기	2018년 7월
일몰 시기	2023년 6월(예정)
인하 폭	30%(출고가 5% → 3.5%)
인하 한도	100만원
연간 개소세 수입	9조 3000억원(2022년 기준)

### 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과세 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복원(안)

구분		현행	개정(안)
매입임대주택 & 임대개시일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종합 부동산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 14.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새로 이 취득(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등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가능
	양도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등록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 배제 가능



## ISA계좌 절세효과 사례

순이익	현행세금 (15.4%)	ISA계좌에서 세금	세금 감면효과
200만원	30만8000원	0원	30만8000원
500만원	77만원	29만7000원	47만3000원
1000만원	154만원	79만2000원	74만8000원



## 직장인영어회화 공부법 8

### '일하는 친구' 찾기

직장에서 영어 실력을 향상하려면 사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수줍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교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설명한다면, 당신은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직장 친구'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직업은 영어 연습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원격으로 일하고 이메일을 통해서만 동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당신은 작문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설 현장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작업 환경은 대화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작업 친구'가 유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성격이나 직장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더라도 직장 동료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고 직장 밖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근무 시간 내내 영어로 짧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거나 퇴근 후 모임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 최신 판례 예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 질 의

- 신청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관장 관사로 사용되는 주택을 1채 소유중이며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 해당 주택은 기관 소재지(시단위) 내 거주지가 없이 부임한 기관장의 관사로만 사용되고 관리지침을 두어 소재지 내에 분양을 받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장을 종업원으로 보아 기관장 관사를 중부령 § 4①(1)의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미환류소득에 대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법인세 신고한 경우 3년간은 계속해서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이후는 투자 제외 방법 적용가능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 질 의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투자합계액 등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투자포함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이하 ‘투자제외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투자포함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한 이후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다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투자포함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097, 2022.12.06

#### ■ 질 의

-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상속주택(A)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매매 및 증여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소유(100%)한 경우로서 A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A)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매매 및 증여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매매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소유(100%)한 경우로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16③(3)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제과-1529, 2022.12.14

#### ■ 질 의

- 공익법인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인 연구기관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부터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계좌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한 계좌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또는 홈페이지지 일괄공지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에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2→6),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안내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 시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및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1년 뒤엔 안착되나?...30일안에 무조건 신고 해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도 내년 5월 말까지로 미뤄진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전월세신고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1년 더 추가 연장했다.

전월세신고제는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주요 계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도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원희룡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라며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기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3. 6

-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하였습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 → 2 → 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



(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및 해외기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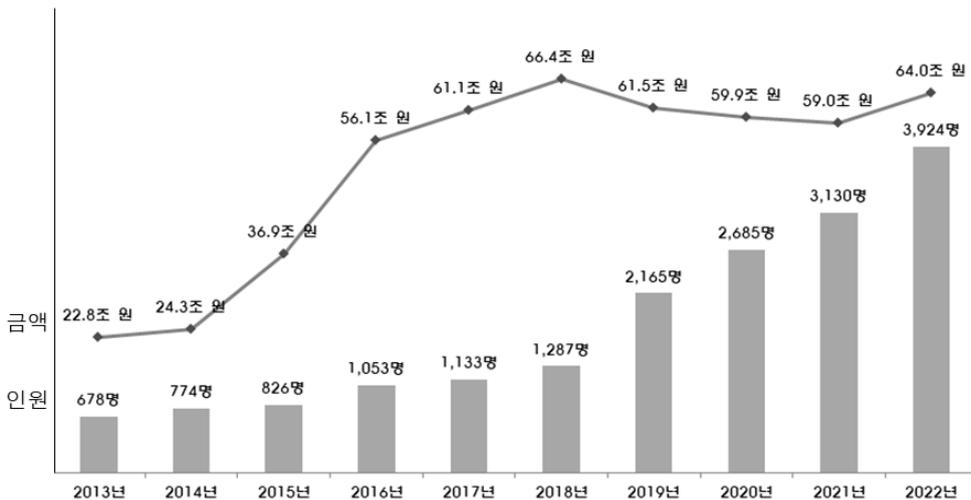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계좌 확대,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개선되어왔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14년) 신고대상계좌 확대(은행 및 증권계좌 >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  
 (16년) 실질소유자 범위 확대(100% 해외현지법인 명의계좌에 대해 법인 주주 신고의무 부여)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10억 원 > 5억 원)

- 국세청은 그간 사전 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신고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그 결과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0조 원을 신고하여 시행 첫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5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0조 원(55%), 예·적금 22.3조 원(35%), 집합투자증권 3.5조 원(5%), 기타(파생상품 등) 3.2조 원(5%)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2.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 실제로 '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9조 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이고,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II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1.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2022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등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급사업자에 개설한 지급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여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초과이

면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②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의무자		'22.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의무 면제자		외국인 거주자 ▷ '13~'22년 동안 국내거주기간 5년 이하 재외국민 ▷ '22년 동안 국내거소기간 183일 이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기준금액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가상자산 포함)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고기한		'23.6.30.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3.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2023.6.30.(금)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서식 45번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신고의무자가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 \* 신고의무자의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올해에도 예상 신고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의무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 → 2 → 6)와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II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 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 내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잔액 산출방법》

자 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가상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2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2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개설되었다가 이후 해지한 D계좌(채권)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3.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 '20.2.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미신고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MIN(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미신고 혐의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 V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붙임 1 -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반 문의사항(문답)

1. 2022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2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3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2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도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 원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로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로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로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로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로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로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7.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is.biz](http://www.smbi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입니다.

**9.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0.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2.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붙임 2 - 금년 시행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 [신고대상]

#### 1.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2.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FTX)의 계좌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3.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 4.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 산출방법]**

**7.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8.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9.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 10.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 11.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기준일 잔액”에 7억을 적습니다.

### 12.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⑰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 [2022년 이전 보유분 신고여부]

### 13.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므로 (2023년 6월 신고)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2023. 6

□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의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적 집행 절차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경 제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ㄱ씨는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과세관청은 3억 5천만 원을 양도가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건설사의 경매 배당금 2억 원에 대해 ㄱ씨가 유치권 관련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다.

원래 이 아파트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



권 채무자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2012년에 이미 해산(청산 종결)해 ㄱ씨가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건설사가 받은 배당액 2억 원을 ㄱ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며,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행정안전부 2023. 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채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채납액만 분리 환수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3. 6

- 
- (조사배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①)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 (유형 ②)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 국내 투자수익을 사주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
    - (유형 ③)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 사업장을 숨기고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무신고한 디지털기업과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제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 1 세무조사 배경

- 세계경기 불황,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안으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밖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안팎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 권익

- ▶ 중복조사 금지 ▶ 세무조사 절차 준수
- ▶ 조사범위 최소화 ▶ 불복 등 권리보호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관 운영

-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검토
-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모니터링·참관

- 또한, 내국 수출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컨설팅
- ▶ 관세청(2월), KOTRA(4월)와 수출기업 지원 MOU

### 국세청장 - 기업인단체 현장소통 · 애로경청

- ▶ 국내 기업인단체 및 산업단지 간담회 (11회)
- ▶ 주한 상공회의소(미국·유럽) 간담회 (2회)

- 국세청은 기업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애로 타개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오로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 역외탈세혐의자는 거래 · 사업 · 실체 구조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 일가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국부를 유출하였습니다.
  - 이런 역외탈세는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헌법가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고 역외탈세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 · 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2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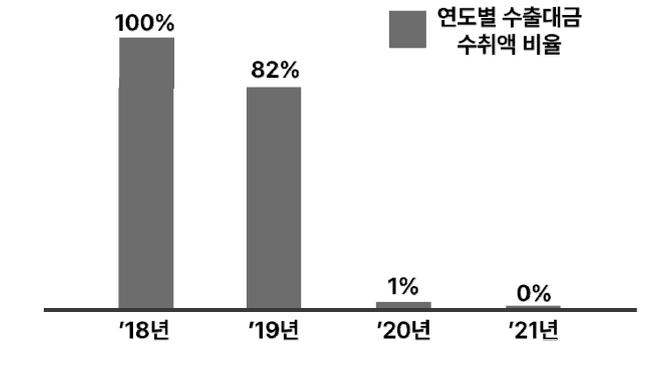
- 세무조사 유형은 ①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②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③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입니다.

< 혐의유형별 조사대상자(총 52명) >

수출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19명	12명	21명

### [ 탈세유형 1 ]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 19명

- 첫 번째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여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하였습니다.
    -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하였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하였습니다.
  -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하였습니다.
-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현지 거래처로의 수출물량 변화(사례 1)  
 현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이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19.11월) 후에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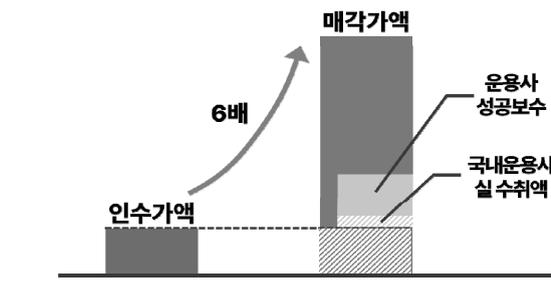


[ 탈세유형 2 ]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 12명

- 두 번째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입니다.
  -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백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투자수익 대비 국내 운용사 수입 과소(사례 3)

국내 기업 인수 후 6배로 매각하여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국내 운용사는 통상 펀드운용사가 받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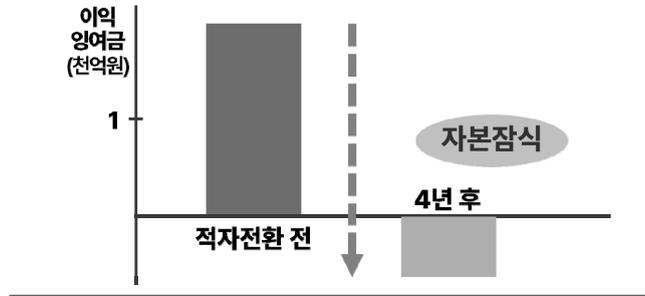


[ 탈세유형 3 ]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 21명

- 세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습니다.

■ 국내시장 철수 前 고의적 적자 발생(사례 6)

이익잉여금을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모회사에 허위대금을 지급하며 세 부담 없이 유출(적자전환 후 자본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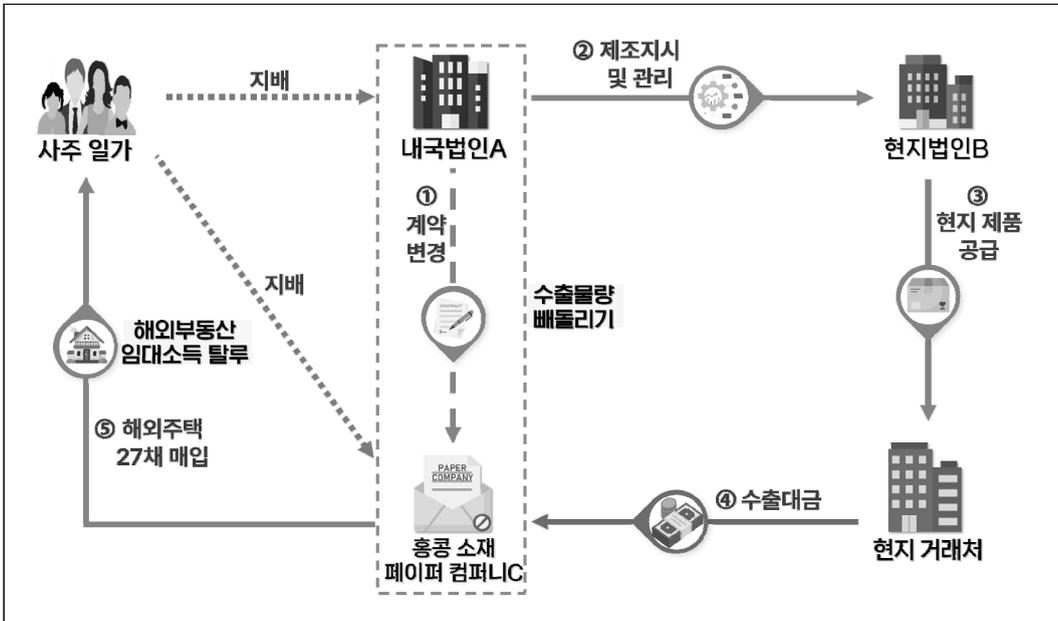
###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하여 '21년 기준 68.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입니다.
-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최근 10년간 12.3조 원 추징)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4 향후 조치방향

-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反)사회적 위법행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사례 1</b>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탈세자금을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수출 가로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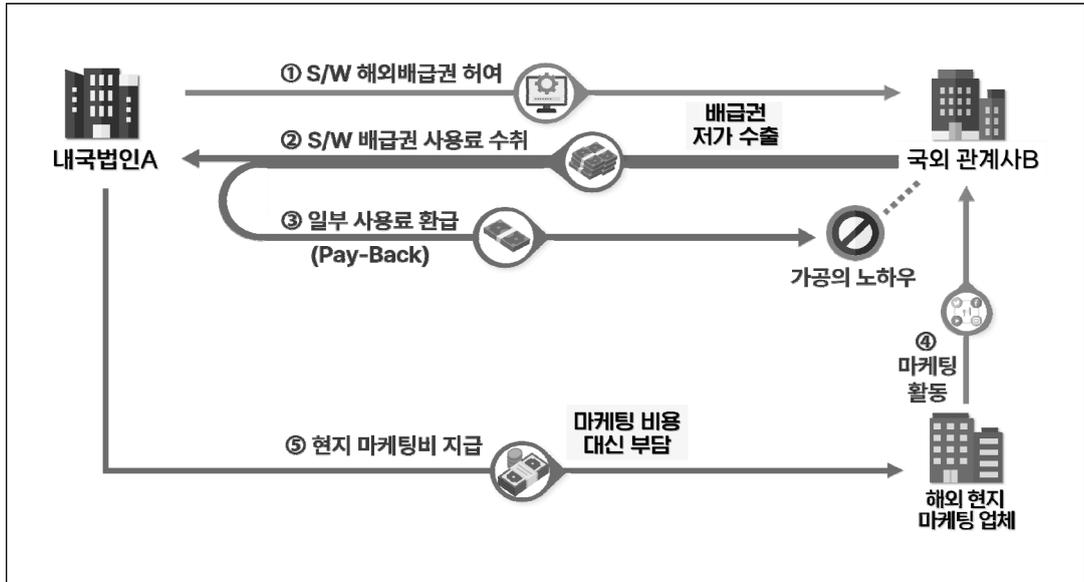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수출물량 빼돌리기)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
  - \*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
  -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 급감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
  - 국내 외환 · 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 탈루

□ 조사방향

-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정

사례 2	국외 관계사에 소프트웨어 해외배급권을 편법으로 저가 제공하고 국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
관계사 간 저가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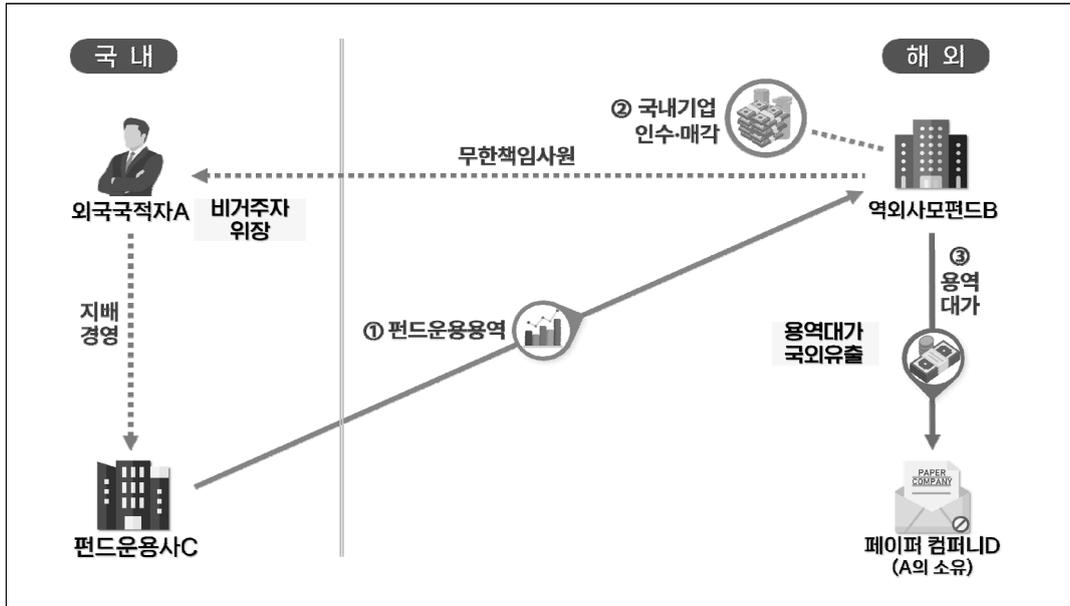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배급권 저가 수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
  - B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 (Pay-Back)하며 B를 부담 지원
- (마케팅 비용 부담)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함에도 A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

□ 조사방향

- A가 B에게 부담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하여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에 대해 부인

<b>사례 3</b>	역외사모펀드의 국내투자 수익 중 일부를 펀드운용사가 성공보수로 받으면서 사주 소유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
<b>검은머리 외국인</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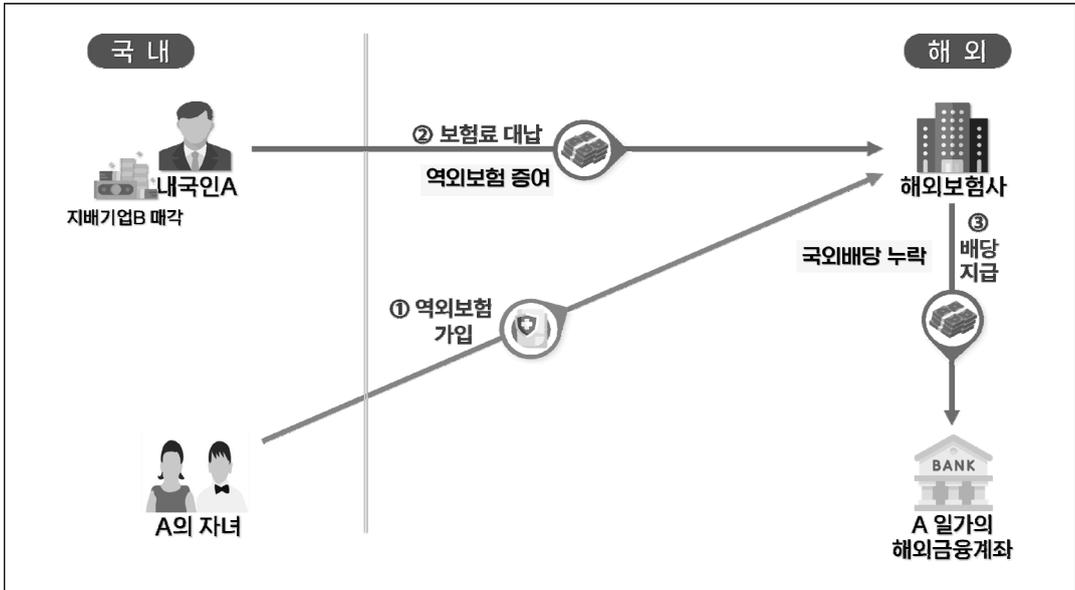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용역대가 국외유출)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 설립
  - A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는 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하였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 발생
  -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를 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수취
- (비거주자 위장)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
  -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

□ 조사방향

-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4**  
역외자산 증여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국내 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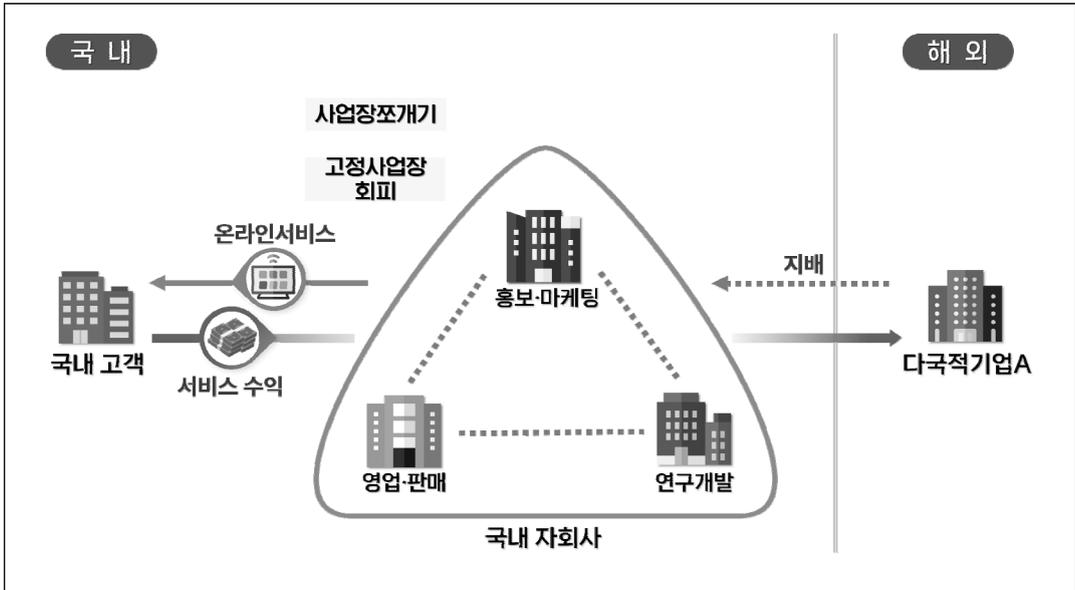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역외보험 증여) A는 내국법인 B의 前 사주로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
  -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 (국외배당 누락)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 무신고

□ 조사방향

-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

<b>사례 5</b> 고정사업장 회피	다국적기업이 국내 고객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주요 사업기능을 다수의 국내 자회사에 분산하여 과세 회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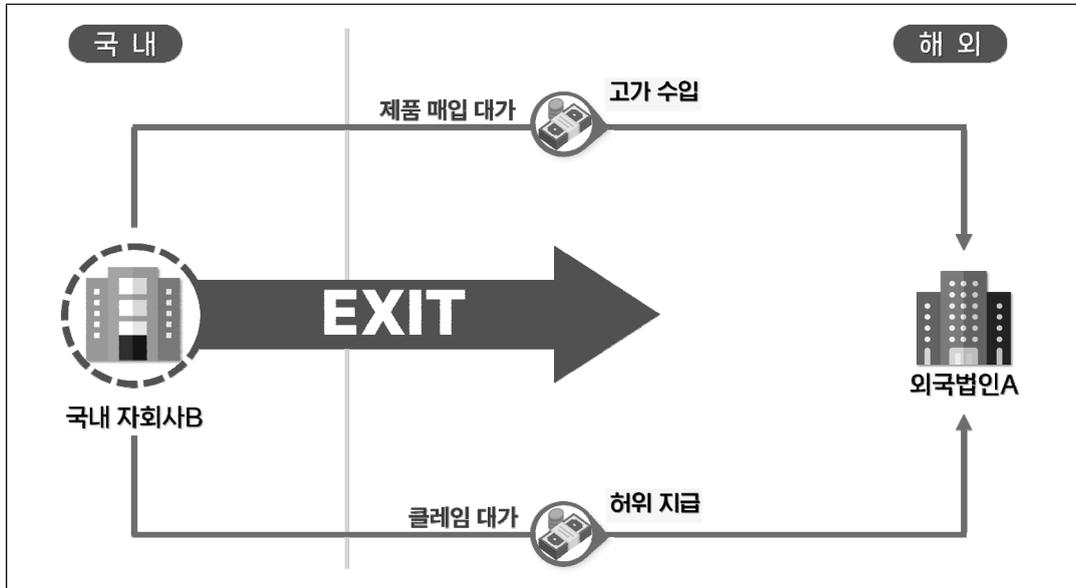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사업장조개기)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
  -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무신고
    - \*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

□ 조사방향

-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

사례 6	국내시장 철수 전에 제품 고가 수입 및 허위의 클레임 대가 지급으로 국내 유보된 이익을 국외로 이전
거래실질	
위장	



□ 주요 탈루혐의

- (청산 전 고가수입)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B는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 철수를 앞두고 A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하여 손실 발생
  -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한 후 자본 잠식 상태로 전환
- (허위 거래) B가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B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A에게 송금
  - \*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통상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음

□ 조사방향

- B의 국내시장 철수 전에 고가 매입 및 클레임 대가에 대해 과세

#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 2023. 6

금융위원회는 오늘(6월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일)한다. 동 개정안은 ①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②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 ①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①DC형은 20%\*, ②IRP형은 30%로 상향됨에 따라,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 ☞ 규제 비율을 IRP보다는 낮게 설정

\*\* [예] A자동차 근로자 X씨가 IRP 계좌를 통해 A중공업(A자동차 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 가능

다음은 DB형에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하다. 미국·영국 등 주요 연금 선진국에서는 DB형 퇴직연금에서 ALM에 기반한 운용이 일반화되어 있어, 채권이 ALM 운용전략 구현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합리화 사항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중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①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하고, ②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되어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추어,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적립금 규모도 '22년 약 5,000만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22년 기준 약 7.1%\*\*로, 여전히 다수 은퇴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 1인당 적립금(만원): ['15] 2,001.9 ['18] 3,112.2 ['21] 4,323.5 ['22E] 4,787.8

\*\* 연금 형태 수급 비중(%): ['18] 2.1 ['19] 2.7 ['20] 3.3 ['21] 4.3 ['22E] 7.1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동 상품은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관행을 혁파한다.

먼저,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하여,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한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 공시(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음으로,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한다. 지금까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를 보조금처럼 활용해 고금리 예금 등을 만들어\*, 이를 일부 대기업 DB형 퇴직연금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에 반하고, 근로자 이익과도 무관\*\*한 바, 수수료 제공·수취 금지를 통해 해당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 [예] A은행은 6.3%의 예금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금리 5%를 제공할테니, 퇴직연금사업자 B가 수수료 150bp를 지불해 "예금금리를 보조"할 것을 제안(수수료 차액 20bp는 A은행이 수취)

\*\*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은 대부분 DB형에서 제공 중인데, DB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 고금리 상품 가입에 따른 수익률 개선 효과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 왔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변칙 파생결합사채는 이러한 규제들을 우회하여 왔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①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②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원금+수익 보장, ②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無, ③ ELS와 계정분리, ④ 공모로 발행

\*\*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 의무, 수수료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등 규제 적용

\*\*\* [예] 만기 도래 시까지 CD금리가 「[0~20%] 5% 금리 제공, [20%~] 원금만 제공」하는 구조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

오늘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며,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참고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 운용규제 합리화

① (DC·IRP)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퇴직연금 제도 별로 상이하므로, 제도 별로 이해상충 규제 합리적 차등화\*

\* 계열회사 및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① [DB] 0% 유지, ② [DC] 10→20%로 상향, ③ [IRP] 10→30%로 상향

② (DB)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ALM)을 감안해, DB형에 한해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

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채 편입 한도 상향(30→50%)

- ③ (DB·DC·IRP)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 확대\*(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 ①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
  - ②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을 RP매수, ③ 자본시장법 상 MMF, ④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 ④ (IRP) 연금 형태 인출에 특화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은퇴 후 연금을 지급 받는 고객  
의 IRP 계좌로만 가입 가능)

□ 불건전 영업 관행 규율 강화

- ①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공시의무 적용(동일기능-동일규제)
- ②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명확화\*를 통해,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유도
  - \* 현재는 수수료 수취는 금지되지만, 자발적인 제공은 가능하다는 업계 관행 존재
- ③ 퇴직연금 시장 내 사모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 ④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적용  
(동일기능-동일규제)
  - \* [예] 만기 도래 시까지 CD금리가 「[0~20%] 5% 금리 제공, [20%~] 원금만 제공」하는 구조  
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실질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2023. 6

정부는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호,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 <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변경 내용 >

- ①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49조제1항)
- ②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49조제2항)
-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영 제59조제2항제2호)
- ④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63조제1항)